



조세브리핑_Tax Briefing

제7호

배포일시	2023. 12. 28.(목)	생산부서 (담당자)	조세연구팀 팀 장 최지훈 / 02-6011-8558 담 당 황영현 / 02-6011-8559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

회원님! 안녕하십니까?

우리회는 회원과 회원의 고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뉴스와 정보들을 정리하여 조세브리핑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회 본회의(2023. 12. 20.)를 통과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요약 해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2023년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(2023. 12.)

* (5개 법률)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-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 특구 내 이전·창업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(유턴기업)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,
- 주거비용 완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완화하고, 재난 피해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

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(2023. 12.)

참고1

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(요약)

1

지방세기본법

제목	주요 내용	비고
①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(법§4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*를 부담토록 개선 *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총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	국세 일치
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(법§4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 	국세 일치
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 (법§5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 및 국세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*를 면제하는 기준금액 상향 (30만원 → 45만원) *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	
④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자료 제출 근거 신설 (법§150의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단체가 집단기획소송 등의 지방세 관련 불복·쟁송*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불복·쟁송자료**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* 심판청구(조세심판원), 감사원 심사청구,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** 사건번호, 청구일자, 사건 개요, 종결 시 결과 등 	
⑤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(§15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·결산, 경영실적 평가, 재무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 의무 신설 	
⑥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우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사항 반영 	

제목	주요 내용	비고
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 (§92의2)	○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,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“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” 도입	국세 동반 개정
②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 (§102, §102의2)	○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자체장이 인용하지 않은 경우, 현재는 배분계산서 “전체를 즉시 확정”하고 있어 “이의제기된 부분을 제외하고 확정”으로 개정 * 1주일 이내에 불복 미제기시 이의제기 취하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도 확정	국세 일치
③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 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 (§103, §103의2)	○ 공매 매각대금 미배분시 해당 금액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	국세 일치
④ “심판청구등” 약칭 통일 (§9, §11, §71)	○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, 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“심판청구등”으로 약칭 ○ “계류”라는 용어를 “계속”으로 수정	국세 일치
⑤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 명칭 정정 (§81)	○ 지방세 부과·징수 등 관련 행정을 일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법률상 명칭을 “지방세정보통신망”에서 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”으로 변경	

제목	주요 내용	비고
① 리스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(§7)	○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(금융리스)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 명확화(운용리스 제외)	
②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 (§10조의3, §22조의2)	○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 개념에 “지급 주체”를 명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○ 신탁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(건설비용 등) 될 부분과 포함되지 않을 부분(분양보수 등)이 혼재되어 있어 과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수수료를 계정별로 구분 기장토록 근거 마련	
③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·납부 기한 개선(§20①)	○ 유상취득(신고기간 60일)과 무상취득(신고기간 3개월)이 혼재된 부담부증여*의 취득세 신고기간을 신고기간이 긴 무상취득 신고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 * 10억 원짜리 주택(주택담보대출 4억 원)을 자녀에게 증여하면, 대출 4억 원은 유상취득, 6억 원은 무상취득	
④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(§26②)	○ 현재는 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법원 등의 촉탁에 따른 등기·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자본금 납입·증자 등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나, 기업회생과 경제회복지원을 위해 「채무자회생법」 상의 법원의 촉탁 등은 예외 없이 비과세 ※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소급하여 적용	

제목	주요 내용	비고
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(§2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(5~10년)이 경과한 물건을 등록할 때 '취득당시 가액'과 '등록 당시 가액'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변경 ※ 현재는 '취득 당시 가액'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	
⑥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(§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	
⑦ 담배소비세 등 특별징수 의무자 규정 신설(§62의2, §152, §15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※ 담배소비세 수시부과·징수 사유 발생시 과세권자인 특·광역시, 시·군(166개)이 각각 부과·징수하고,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 	
⑧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(§103의23, §103의3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1개월*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* 중소기업은 2개월 	
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(§103의2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%에서 10%로 감경 	
⑩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(§103의3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결집단의 결손이 소득보다 큰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세액 배분 방식*을 규정 * 각 연결법인별 소득과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	국세 동반

제목	주요 내용	비고
⑪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문 정비 (§103의5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도록 규정 정비 * 다수의 외국인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하는 계좌 	국세 동반
⑫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 (§103의53, §103의5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업기업인 동시에 동업자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동업기업 특례*가 적용되도록 요건 합리화 * 동업기업(법인)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업자(출자자)에게 과세하고 동업기업은 비과세 	국세 동반
⑬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(§103의6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을 '24년 과세기간까지 2년 연장 	
⑭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 면제 신설 (§13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 	
⑮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(§14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*가 일치함을 명확히 함 * (현행)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(개선)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※ 소방분은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며, 재산세 과세기준일, 납기 등 규정을 준용 중 	
⑯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 (§15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담배소비세를 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'납입'하는 절차 규정이 있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에도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'납입' 문구 추가 	
⑰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(부칙§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*를 3년간 추가 연장 *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율을 0.05%p씩 인하한 특례세율 한시 적용 중('21년~'23년) 	

4

지방세특례제한법

제목	주요 내용	비고
①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(§4)	○ 지자체 현안 대응력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감면 활성화 기반 마련* * 조례감면 가능 범위 확대,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대상 기준 완화 등	
② 농업분야 사후관리체계 정상화(§6 등)	○ 감면 목적 및 감면 물건이 유사한 납세자*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징규정의 통일적 정비 * 자경농민·귀농인	
③ 어업법인 감면요건 강화 (§12)	○ 감면대상 어업법인에 대하여 어업경영정보 등록 의무 부여* * 농업법인은 '20년부터 농업경영정보의무 旣부여	
④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신설(§19)	○ 직장 어린이집 용도로 위탁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규정 신설 * (現) 직접 사용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사후관리 규정 有	
⑤ 감면요건 “직접 사용” 통일적 규정(§19의2 등)	○ 입법취지 및 특례 체계에 부합토록 감면 요건을 “직접 사용”으로 통일·명확화* * (現) 일부 조문상 “설치·운영”, “사용” 등으로 규정	
⑥ 법인 적격분할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(§57의2)	○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격분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※ (국세) 적격분할 대상에서 임대업 제외 旣개정('20년말)	
⑦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(§58의3)	○ 감면 제외대상인 “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”를 영에서 구체화*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* 개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	
⑧ 반환공여구역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(§75의4)	○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유사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징요건 보완·정비	
⑨ 소멸·멸실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(§92)	○ 소멸·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는 비과세 성격으로 지방세법으로 일원화* * (現) 동일 면제 내용을 2개의 법(지방세법, 지방세 특례제한법)에서 각각 규정 중	
⑩ 재난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(§92)	○ 국가적 재난(특별재난지역선포 등) 발생시 신속·통일적 감면 지원되도록 체계 구축* *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유족 지방세 감면 법정화	
⑪ 친환경 자동차 등 중복 감면 특례 명확화(§180)	○ 제작 결함으로 인해 교환 취득시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*하도록 명확화 * 종전 취득시 부담한 세액까지는 세액공제 + 종전부담 세액 초과분도 개별 감면요건 충족시 감면	

5

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

제목	주요 내용	비고
①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(부칙 §1~3)	○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일정 조정에 따라,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을 '24. 1. 1.에서 '25. 1. 1.로 조정	